

(사업방법서 별지)

## 무배당 하이브리드 유니버설보장보험

### 1. 보험종목의 명칭

- 가. 무배당 하이브리드 유니버설보장보험 집중체증형 - 56 세형
- 나. 무배당 하이브리드 유니버설보장보험 집중체증형 - 61 세형
- 다. 무배당 하이브리드 유니버설보장보험 집중체증형 - 66 세형
- 라. 무배당 하이브리드 유니버설보장보험 기본체증형 - 56 세형
- 마. 무배당 하이브리드 유니버설보장보험 기본체증형 - 61 세형
- 바. 무배당 하이브리드 유니버설보장보험 단기체증형 - 56 세형
- 사. 무배당 하이브리드 유니버설보장보험 단기체증형 - 61 세형
- 아. 무배당 하이브리드 유니버설보장보험 단기체증형 - 66 세형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 가. 집중체증형, 단기체증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56 세형	61 세형	66 세형	
종신	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5세	월납
	10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5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5세	
	20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55세납	만 15세 ~ 45세	만 15세 ~ 45세	만 15세 ~ 45세	
	60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65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70 세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만 15 세 ~ 60 세	
	75 세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만 15 세 ~ 65 세	
	80 세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만 15 세 ~ 65 세	

나. 기본체증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56 세형	61 세형	
종신	5 년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월납
	10 년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15 년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20 년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55 세납	만 15 세 ~ 45 세	만 15 세 ~ 45 세	
	60 세납	만 15 세 ~ 50 세	만 15 세 ~ 50 세	
	65 세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55 세	
	70 세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75 세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80 세납	만 15 세 ~ 55 세	만 15 세 ~ 60 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가. 의무부가하는 특약의 종류

이 보험은 사망급부가 체증되어 사망보장 및 환급률이 강화된 상품으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해지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금으로 전환시 고객에게 유리한 가입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그 내용을 계약시 인지할 수 있도록 무배당 가입당시 연금전환특약과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을 의무부가하여 판매한다.

나. 전환방법 및 전환한도

- (1)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이후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2)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000 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부가 된다.

- (3)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율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 (4)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은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5)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최소 1,000 만원으로 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하지 않음

#### 5.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가. 사망보험금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월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한다.

##### 나. 체증나이

체증나이라 함은 보험종목별로 아래와 같으며, 계약 체결 이후 변경할 수 없다.

보험종목	체증나이
56 세형	56 세
61 세형	61 세
66 세형	66 세

##### 다. 기본보험금

집중체증형 계약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75 세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10%씩 증액된 금액을 말하고, 기본체증형 계약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0 세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5%씩 증액된 금액을 말하며, 단기체증형 계약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체증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 년 동안 매년 5%씩 증액된 금액을 말한다. 단,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성립 후 보험기간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외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매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계약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의 100% 이내이다.

단, 전년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중도인출금 포함)이 전년도까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당해년도에 추가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로 한다. 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사업비(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를 부과한다.

### 다. 특약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가. 고액계약에 대한 기본보험료 할인

가입금액	할인율
1억 미만 (단, 9,700만원초과 1억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기본보험료 <sup>㉞</sup> 의 0%
1억이상	기본보험료 <sup>㉞</sup> 의 2.5%

㉞ 건당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beta_3$ )를 포함하지 않는 영업보험료

### 나. 금융기관 자동이체시의 기본보험료 할인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의 1%를 할인한다.

####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선납을 취급하지 않음

#### 9.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제 10 조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의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공제액을 공제한다.

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는다.

####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성립 후 1 개월 이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단,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단 위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가’항에 따라 1 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한도로 한다.

다. ‘가’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리빙베네팅 인출 횟수를 합하여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한다.

라. ‘가’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마. ‘가’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 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추가적립금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2. 리빙베네팅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일부터 10 년이상 경과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리빙베네팅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인출금액은 가입금액의 1~10% 범위 내에서 1%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나. ‘가’ 항에 따라 리빙베네팅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리빙베네팅인출 횟수를 합하여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회사는 다음의 상황에서 리빙베네팅인출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1) 총인출누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었을 경우
- (3) 계약자의 중지신청이 있을 경우

## 13.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의 적용은 계약일로부터 매 1 년간 확정 적용한다. 확정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연단위 계약해당일의 공시이율로 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

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a)$$

공시기준이율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계정별 자산규모가 작아 구분산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구분 없이 산출할 수 있다.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 외부지표금리} \\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 2)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3)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4)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end{aligned}$$

- a 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고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 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 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d 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

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 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나) 운용자산이익률

- 1)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 2)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수익}) \times 100}{\{ \text{직전13개월말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비용}) \times 100}{\{ \text{직전13개월말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12개월간투자영업비용}) \}}$$

- 3)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 1)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 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2)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3)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4)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5)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6)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바.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규정」에 따른다.

#### 1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 15.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내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후부터는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제 16 조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의 '나' 항에 따른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 16.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장을 위한 보험료 포함),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나.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장을 위한 보험료 포함),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

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단,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공제한다.

## 1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까지는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해당월 기본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함)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이후에는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함)으로 정한다.

다. ‘가’ 항 및 ‘나’ 항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

라. ‘나’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경과 후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납입최고기간 종료일의 직전월까지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을 납입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잔액이 없으며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나’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는다.

## 18.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19.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누계를 말하며,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누계를 말한다.

나.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나’ 항에 따라 해당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적립금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인출금액 차감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을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단, “사망보험금”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인출 전 이미납입한보험료 - 인출금액
- $$\frac{\text{인출 전 이미납입한보험료} - \text{인출 전 이미납입한보험료} \times \text{인출금액}}{\text{인출전계약자적립금}}$$

라.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begin{aligned} & \text{감액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직전 보험가입금액}}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감액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직전 보험가입금액}} \end{aligned}$$

## 20. 기타사항

가. 약관 제 23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나. 회사는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다.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